

투자위험등급 : 5등급(낮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u> 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다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다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다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5년 1월 2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3월 2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3787-3500, <http://www.midasasset.com>),
금융투자협회(02-2003-9000, <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협회(<http://www.kofia.or.kr>)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마이다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현재기준)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합병, 모자형 전환 등)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5년 01월 26일					
마이더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 [펀드코드: DE981]					
투자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채권가격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회사채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마이더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 A등급 이상의 회사채, A2등급 이상의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 추구 - 채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3~5년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여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 추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2% 이내	0.3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0.408	0.300	0.400	0.408	42	86	132	231	52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1% 이내	0.208	0.100	0.260	0.208	31	54	77	128	27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258	0.150	0.270	0.258	26	54	83	146	33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 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 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및 보수 등 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2024/01/27~ 2025/01/26	최근 2년 2023/01/27~ 2025/01/26	최근 3년 2022/01/27~ 2025/01/26	최근 5년 2021/01/27~ 2025/01/26	설정일 이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펀드(C-F)	2021-01-27	7.37	6.17	3.74	-	2.42				
	비교지수(%)	2021-01-27	5.80	4.76	3.00	-	1.78				
	수익률 변동성(%)	2021-01-27	2.86	3.59	4.21	-	3.80				
	(주1) 비교지수: KIS 종합채권지수 국내(1~10Y) 65% +국채(10Y~) 5% + 지방채~ABS(1~5Y, AA+ 이상) 28% + Call Rate 2%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구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채권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기민수	1980	책임 (본부장)	41개	68,878	6.32	5.71	6.32	5.71	13년 8개월		
	김연우	1985	부책임 (부장)	21개	49,809	6.85	5.95			8년 7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 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 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 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 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 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 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 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 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 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 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 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채 투자위험		회사채는 국공채 및 통안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회사채에 주 로 투자하는 회사채형 투자신탁의 경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보다 투자위험 이 높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 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관련 세금 등 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 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7-3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das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5년 3월 20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기관, 펀드(C-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C-I)	최초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개인 또는 100억원 이상 법인 고객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 계좌 고객 및 특정금전 신탁 고객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시드(Cs)	최초설정 또는 원활한 운용규모 유지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마이다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	DE98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E983
수수료선취-온라인(Ae)	DE9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E9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E98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E9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E9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E9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펀드(C-F)	DE9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E9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DE9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DE9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DE99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DE9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시드(Cs)	DE99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미해당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최초 설정시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마이다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	DE98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E983
수수료선취-온라인(Ae)	DE9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E9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E98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E9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E9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E9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펀드(C-F)	DE9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E9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DE9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DE9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DE99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DE9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시드(Cs)	DE99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1-01-27	최초 효력발생
2021-04-22	비교지수 변경 - 변경전: KIS 종합채권지수_국채(1~20Y) 50% + KIS 종합채권지수_지방채~ABS(1~5Y, AA- 이상) 40% + Call Rate 10% - 변경후: KIS 종합채권지수_국채(1~10Y) 65% + KIS 종합채권지수_국채(10Y~) 5% + KIS 종합채권지수_지방채~ABS(1~5Y, AA+ 이상) 28% + Call Rate 2%
2022-03-30	정기갱신
2023-02-28	정기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4-02-22	정기갱신 및 법 개정사항 반영
2025-03-20	-신탁계약서 변경(법 개정사항 반영, 용어 개정 반영) -정기갱신, 기업공시서식 및 법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대표전화 : 02-3787-35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형)(%)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기민수	1980	책임 (본부장)	41개	68,878	6.32	5.71	6.32	5.71	*경력년수: 13년 8개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08.06~11.04 동부자산운용 -11.04~12.07 디멘전투자자문 -12.07~17.05 흥국자산운용 -17.05~19.06 DB 자산운용 -19.07~19.12 라임자산운용 -19.12~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김연우	1985	부책임 (부장)	21개	49,509	6.85	5.95			*경력년수: 8년 7개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0.12~16.04 삼일회계법인 -16.05~18.04 흥국자산운용 -18.04~20.08 NH 투자증권 -20.09~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모

운용역	직위	운용 규모(억원)
기민수	책임운용역	1,226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기관, 펀드(C-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C-I)	최초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개인 또는 100억원 이상 법인 고객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 계좌 고객 및 특정금전 신탁 고객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시드(Cs)	최초설정 또는 원활한 운용규모 유지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과 자본 이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등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2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를 포함하고(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2 이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포함하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채권등”이라 한다)
2.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어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5. 채권관련파생 상품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채권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6.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총액의 50% 미만	환매조건부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7. 증권의 대여 (주1)	보유 채권총액의 50% 미만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상기의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 집합투자증권의 차입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10. 기타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1, 2, 3, 4에 대하여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5, 6, 7, 8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처분 의무는 소멸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1.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하는 행위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파생결합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매매	3.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4. 채권관련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5. 채권관련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7.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	가목 및 나목에 한하여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상기 투자제한 2, 3, 4, 5, 6, 7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 상기 투자제한 2, 4, 5, 6 및 투자제한 7의 가목 및 나목,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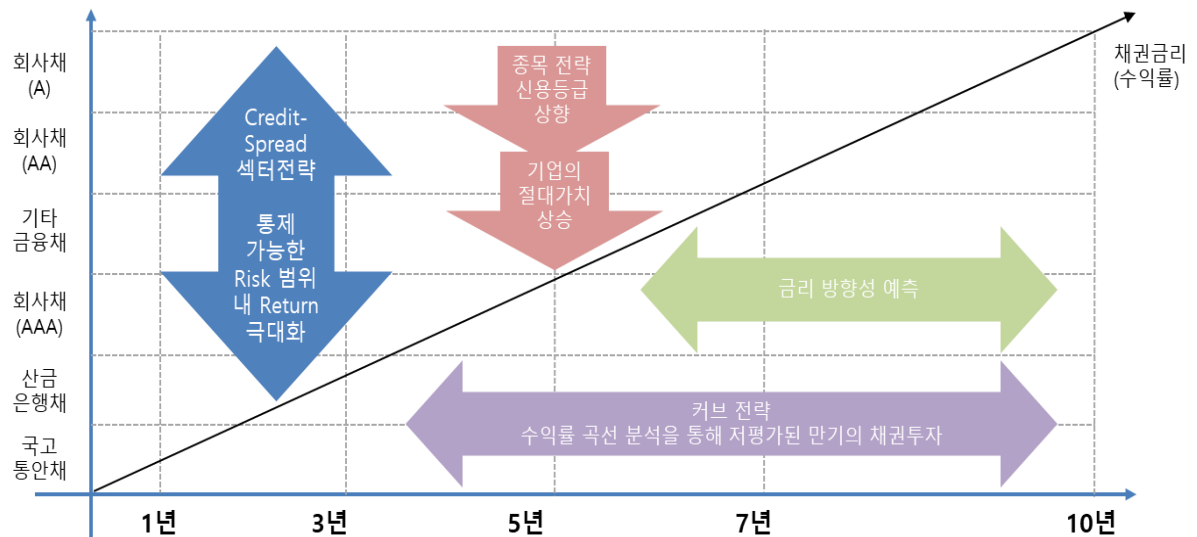
(1) 투자전략

- 채권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
- 펀더멘탈이 양호한 A등급 이상의 회사채, A2등급 이상의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에 주로 투자하여 신용위험 대비 경쟁력 있는 이자수익 추구
- 채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시장상황에 따라 3~5년 내외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 추구

[주요 운용전략]

- 펀드 듀레이션 관리

-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지표 계량화(Quantamental Tool)를 통해 종합 경기 모멘텀 지표를 도출하여 시장금리를 전망.
- 금리 전망에 따라 듀레이션을 3~5년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초과수익 추구
- 크레딧 투자 전략
 - Midas Credit Analytics 모델을 통해 최근 실적 및 주요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회사의 펀더멘탈 판단
 - 기업탐방 및 IR, 외부 산업분석 자료 등을 통한 정성적 분석 적극 활용
 - 펀더멘탈이 양호한 회사를 선정하여 신용위험 대비 경쟁력이 있는 이자수익 추구
- 상대가치 전략
 - 시장 왜곡 발생시 고평가 구간 비중 축소, 저평가 구간 비중 확대 통해 상대가치 투자 실행
 - 시간 경과에 따른 수익률 곡선 정상화로 초과수익 추구
- 채권 알파 전략
 - 레포 매도 및 대차 매도를 활용한 Yield Gapping
 - 역발상 투자: 계절성, 수급 등에 따라 비이성적인 시장상황을 이용하여 저가 매수하고, 시장상황이 정상화되면 고가 매도하는 전략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으로 채권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채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요인	위험관리방안
신용채권 투자	• 엄격한 당사의 회사채 투자 유니버스 내 종목에 한정하여 투자 • 투자 중인 신용채권의 경우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관리 • 월 단위 투자위원회 개최, 투자 유니버스 점검 후 승인

유동성 수준	• 향후 유동성 제약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비지표, 저신용채의 편입한도를 관리 • 신용 위험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유동성이 강화되는 종목 지속 발굴
금리 리스크	•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며, 지속적인 Roll-Over 를 통한 자체 금리 리스크 관리 • 시장상황에 맞는 합리적 듀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탐색
운용 관련 규정준수	• 사전 Compliance Check 를 통해 주문 입력시 위반여부 판단 • 운용전략 수립 시 운용규정 확인을 기본으로 전략 수립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비교지수

※ 비교지수: KIS 종합채권지수_국채(1~10Y) 65% + KIS 종합채권지수_국채(10Y~) 5% + KIS 종합채권지수_지방채~ABS(1~5Y, AA+ 이상) 28% + Call Rate 2% - KIS 종합채권지수: KIS 채권평가가 발표하는 종합채권지수로서 신용등급 BBB- 이상의 우리나라 채권들로 구성됩니다. 구성 섹터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증권, 은행채, 기타금융채, 회사채, ABS 를 포함합니다. - KIS 종합채권지수_국채(1~10Y): KIS 종합채권지수 중 만기가 1년 초과 ~ 10년 이하인 국고채권으로 구성됩니다. - KIS 종합채권지수_국채(10Y~): KIS 종합채권지수 중 만기가 10년 초과인 국고채권으로 구성됩니다. - KIS 종합채권지수_지방채~ABS (1~5Y, AA+ 이상): KIS 종합채권지수 중 만기가 1년 초과 ~ 5년 이하인 지방채, 특수채, 통안증권, 은행채, 기타금융채, 회사채로 구성됩니다. 신용등급 AA+ 이상 채권으로 구성됩니다. - Call 지수: 콜금리 수익률에 따른 지수로 KIS 채권평가가 발표합니다. ▶ 상기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이 투자신탁이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는 운용의 특성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마이데이터셋자산운용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이 되는 채권의 가격변동 및 이자수익 등에 의해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 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

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 중 일부를 조합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발행된 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조기상환으로 인해 만기 이전에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져 채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이 만기 상환시의 수익률보다 낮아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 특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신탁의 채권 운용 전략으로 인한 위험	시중 금리의 변동 또는 투자대상 채권의 신용도의 변화 등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이 변동하여 투자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도자산 등의 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산 상각에 따른 평가액이 지속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발행사의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 투자위험	회사채는 국공채 및 통안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회사채형 투자신탁의 경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보다 투자위험이 높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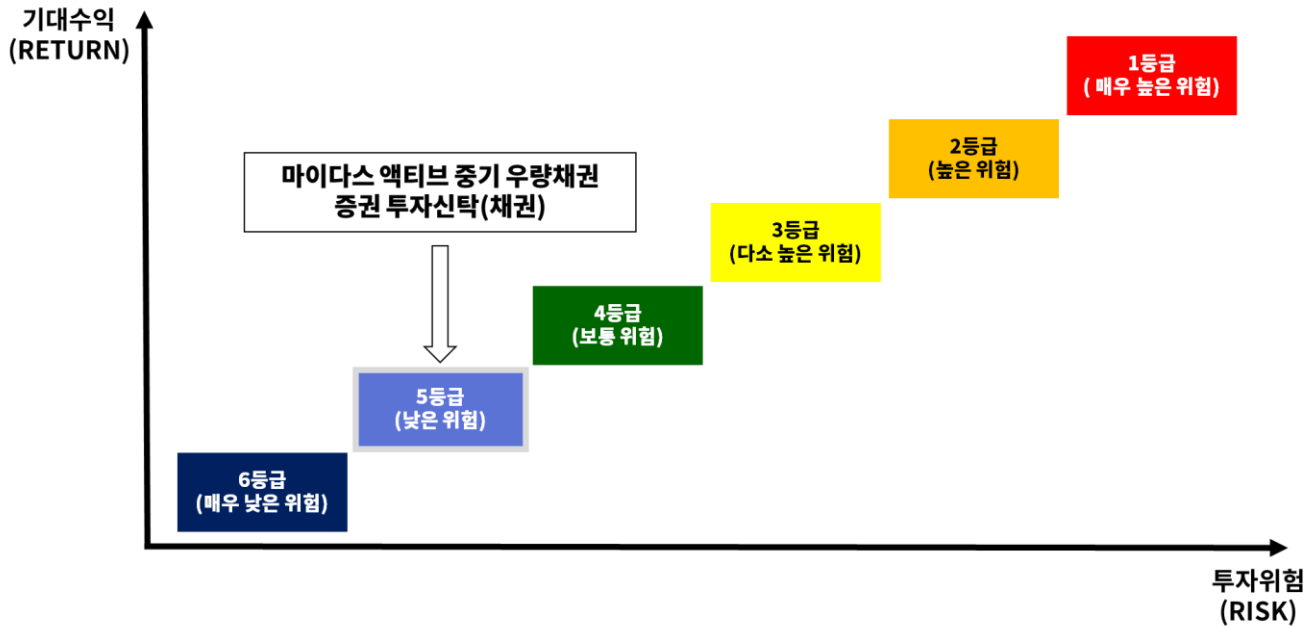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시점과 환매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이 투자자가 환매청구시점에 예상한 순자산가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마이다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 8.04%이므로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이해하며,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추후 매결산 시마다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매우높은위험)	2(높은위험)	3(다소높은위험)	4(보통위험)	5(낮은위험)	6(매우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및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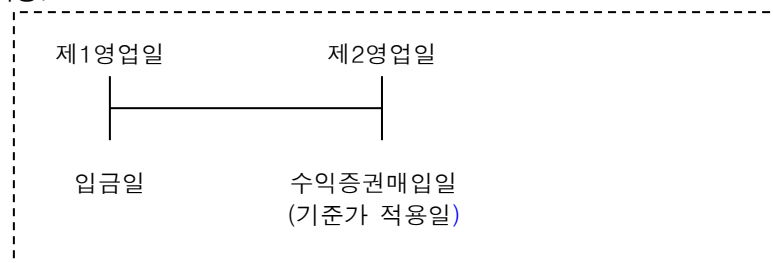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클래스	펀드코드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E981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수수료선취-온라인(Ae)	DE983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E984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E985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E986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E987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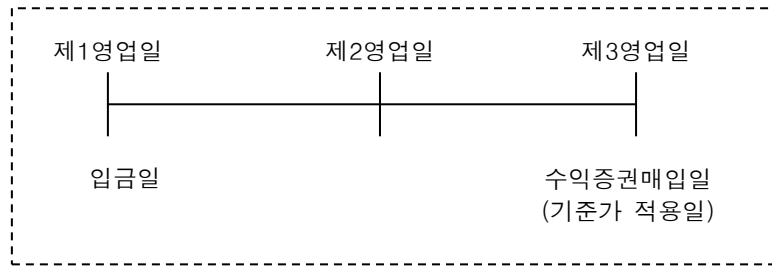
		가입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E988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 보유투자자 및 특정금전신탁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펀드(C-F)	DE989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E990	최초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100억원 이상의 법인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DE99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DE99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DE9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DE994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시드(Cs)	DE995	최초설정 또는 원활한 운용규모 유지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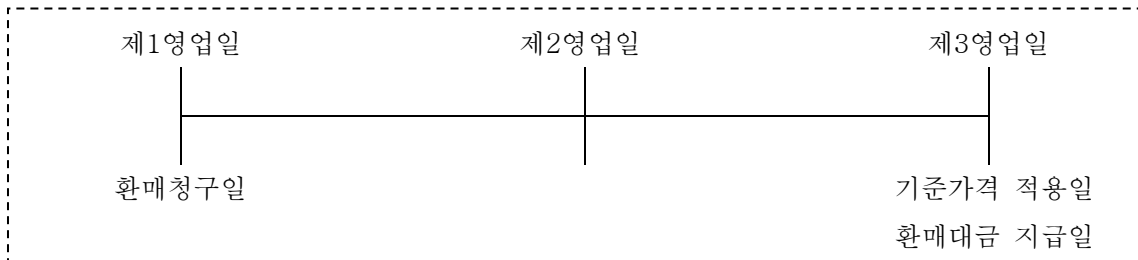
환매 불가	환매 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환매수수료 미발생
X	X	O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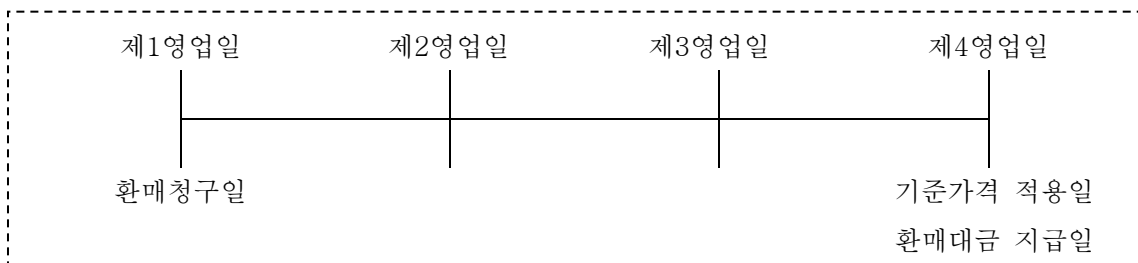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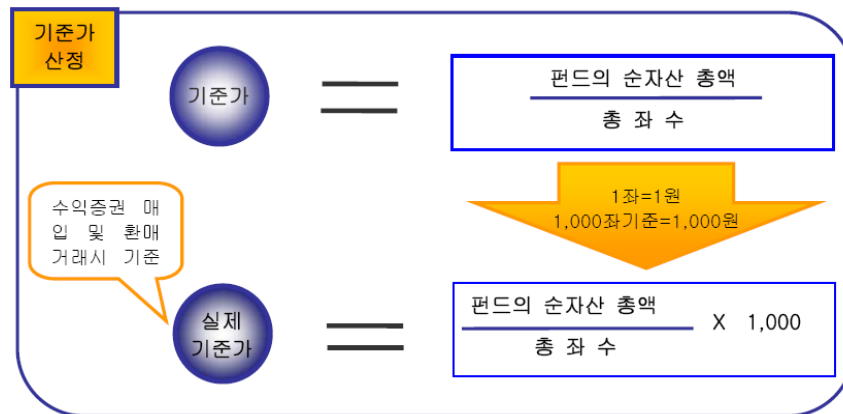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midasasset.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④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⑤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⑥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납입금액의 0.2%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납입금액의 0.1%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15%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 보유투자자 및 특정금전 신탁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 펀드(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최초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100억원 이상의 법인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없음	없음	없음

개인연금(C-P1)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시드(Cs)	최초설정 또는 원활한 운용규모 유지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투자자 전용	없음	없음	없음
지급시기	-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수탁 회사 보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 용	동종 유형 총보수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075	0.200	0.020	0.013	0.308	-	0.308	0.350	-
수수료선취-온라인(Ae)	0.075	0.100	0.020	0.013	0.208	-	0.208	0.26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075	0.300	0.020	0.013	0.408	-	0.408	0.4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075	0.150	0.020	0.013	0.258	-	0.258	0.270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075	0.140	0.020	0.013	0.248	-	0.24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075	0.210	0.020	0.013	0.318	-	0.31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075	0.000	0.020	0.013	0.108	-	0.10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075	0.010	0.020	0.013	0.118	0.0018	0.1298	-	0.0201

기관, 펀드(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075	0.015	0.020	0.013	0.123	-	0.12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0.075	0.240	0.020	0.013	0.348	-	0.348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0.075	0.120	0.020	0.013	0.228	-	0.22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0.075	0.220	0.020	0.013	0.328	-	0.328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0.075	0.110	0.020	0.013	0.218	-	0.21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시드(Cs)	0.075	0.005	0.020	0.013	0.113	0.0018	0.1248	-	0.0201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84,628
금융비용 (이자비용 등)	6,348,291

주3)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입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51	85	119	194	416
수수료선취-온라인(Ae)	31	54	77	128	2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42	86	132	231	5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6	54	83	146	333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40	67	95	155	3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33	67	103	180	4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11	23	35	61	1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3	27	42	74	167

기관, 펀드(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13	26	40	70	1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	36	73	112	197	4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1)	23	48	74	129	2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34	69	106	186	4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22	46	70	123	2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시드(Cs)	13	26	40	71	16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증권거래비용은 제외)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보수 차감 전 기준), 판매수수료율은 A클래스 0.2%, Ae클래스 0.1%, AG클래스 0.1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수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A와 C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10개월, 종류 Ae와 Ce는 약 1년 1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증권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 공시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종류 C-P1, C-Pe1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2, C-Pe2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2기(2022.01.27 ~ 2023.01.26)	선진회계법인	적정
제3기(2023.01.27 ~ 2024.01.26)	선진회계법인	적정
제4기(2024.01.27 ~ 2025.01.26)	선진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 4 기	제3기	제2기
	2025.01.26	2024.01.26	2023.01.26
운용자산	621,191,701,686	540,593,643,602	404,339,740,790
유가증권	494,775,882,453	415,004,882,592	349,140,551,13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8,687,590,571	34,053,339,169	26,255,280,801
기타 운용자산	77,728,228,662	91,535,421,841	28,943,908,850
기타자산	13,613,198,634	3,675,920,094	2,843,959,069
자산총계	634,804,900,320	544,269,563,696	407,183,699,859
운용부채	185,347,950,766	143,714,063,012	55,605,326,903
기타부채	40,148,489,254	11,015,177,370	28,051,387
부채총계	225,496,440,020	154,729,240,382	55,633,378,290
원본	409,308,460,300	389,540,323,314	359,364,935,220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0	0	-7,814,613,651
자본총계	409,308,460,300	389,540,323,314	351,550,321,569
운용수익	37,144,325,006	24,143,484,039	-3,987,031,595
이자수익	21,329,691,237	18,371,959,060	13,348,752,384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손익	15,761,152,592	5,692,194,893	-17,361,717,003
기타수익	53,481,177	79,330,086	25,933,024
운용비용	6,449,429,151	5,110,309,973	3,232,271,368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61,710,706	49,420,442	51,791,760
기타비용	6,387,718,445	5,060,889,531	3,180,479,608
당기순이익	30,694,895,855	19,033,174,066	-7,219,302,963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4 기 53 백만원, 3 기 79 백만원, 2 기 26 백만원)

(주 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4 기 0 원, 3 기 2 백만원, 2 기 6 백만원)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			전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장내파생	1,294,206	22.91	0.0018	1,582,492	25.74	0.0016
주식 이외의 증권 (채권 등)	3,133,766	-	-	3,445,568	0.16	-
합계	4,427,972	22.91	0.0005	5,028,061	25.90	0.0005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25.01.26	2024.01.26	2023.01.26
운용자산	621,191,701,686	540,593,643,602	404,339,740,790
현금및예치금	48,687,590,571	34,053,339,169	26,255,280,801
현금및현금성자산	48,636,060,571	34,053,174,169	24,303,303,811
증거금	51,530,000	165,000	1,951,976,990
대출채권	77,728,228,662	91,535,421,841	28,943,908,850
매입어음	77,728,228,662	91,535,421,841	28,941,476,952
대출금	0	0	2,431,898
유가증권	494,775,882,453	415,004,882,592	349,140,551,139
채무증권	494,775,882,453	415,004,882,592	349,140,551,139
기타자산	13,613,198,634	3,675,920,094	2,843,959,069
매도유가증권미수금	9,384,000,000	0	0
정산미수금	0	90,260,000	2,550,000
미수이자	3,818,427,423	3,225,822,135	2,348,958,397

선급비용	410,771,211	358,897,155	491,078,902
기타미수입금	0	940,804	1,371,770
자 산 총 계	634,804,900,320	544,269,563,696	407,183,699,859
운용부채	185,347,950,766	143,714,063,012	55,605,326,903
환매조건부채권매도	185,347,950,766	143,714,063,012	55,605,326,903
기타부채	40,148,489,254	11,015,177,370	28,051,387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9,308,500,000	0	0
정산미지급금	51,530,000	415,000	21,000,000
수수료미지급금	10,701,764	10,029,578	7,051,387
기타미지급금	1,510,989	0	0
미지급이익분배금	30,776,246,501	11,004,732,792	0
부 채 총 계	225,496,440,020	154,729,240,382	55,633,378,290
원 본	409,308,460,300	389,540,323,314	359,364,935,220
이익잉여금	0	0	-7,814,613,651
자 본 총 계	409,308,460,300	389,540,323,314	351,550,321,569
부채 및 자본 총계	634,804,900,320	544,269,563,696	407,183,699,859
총좌수 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운용)	409,308,460,300	389,540,323,314	359,364,935,220
총좌수 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F	404,351,868,318	385,637,399,730	354,930,152,047
총좌수 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s	5,328,388,821	5,200,000,000	5,200,000,000
기준가격 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운용)	1,000	1,000	978.25
기준가격 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	1,000	1,000	1,000
기준가격 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F	1,000	1,000	975.89
기준가격 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s	1,000	1,000	975.99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 기	제3기	제2기
	2024.01.27 ~ 2025.01.26	2023.01.27 ~ 2024.01.26	2022.01.27 ~ 2023.01.26
운용수익(운용손실)	37,144,325,006	24,143,484,039	-3,987,031,595
투자수익	21,383,172,414	18,451,289,146	13,374,685,408
이자수익	21,329,691,237	18,371,959,060	13,348,752,384
수수료수익	53,481,177	79,330,086	25,933,024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4,541,224,511	27,375,041,610	18,753,283,993

지분증권매매차익	0	167,531,312	0
채무증권매매차익	13,715,255,638	8,889,930,070	6,382,610,843
파생상품매매차익	5,460,663,794	11,733,860,000	9,177,298,000
채무증권평가차익	5,365,305,079	6,583,720,228	3,193,375,15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8,780,071,919	21,682,846,717	36,115,000,996
채무증권매매차손	3,076,285,961	10,633,911,244	21,067,951,945
파생상품매매차손	5,141,441,794	10,950,391,500	9,428,270,000
채무증권평가차손	562,344,164	98,543,973	5,618,779,051
운용비용	6,449,429,151	5,110,309,973	3,232,271,368
매매수수료	61,710,706	51,104,258	57,310,068
이자비용	6,348,291,785	5,024,813,305	3,138,543,520
기타운용비용	39,426,660	34,392,410	36,417,78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 증권투자신탁(채권)(운용)	30,694,895,855	19,033,174,066	-7,219,302,963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 증권투자신탁(채권)C	0	0	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 증권투자신탁(채권)C-F	29,793,168,270	18,325,946,176	-7,637,121,994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 증권투자신탁(채권)Cs	394,038,753	253,243,234	-49,792,037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 증권투자신탁(채권)(운용)	75.46	49.94	-17.8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 증권투자신탁(채권)C	0	0	0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 증권투자신탁(채권)C-F	74.18	48.61	-19.05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마이다스액티브중기우량채권 증권투자신탁(채권)Cs	73.96	48.7	-9.5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마이다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운용)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1/27~2023/01/26	472,096	465,823	4,123	3,950	116,854	111,003	359,365	351,550
2023/01/27~2024/01/26	359,365	351,550	30,623	30,400	447	438	389,540	400,545
2024/01/27~2025/01/26	389,540	389,540	38,473	39,591	29,707	30,747	409,308	440,085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종류형 펀드

마이다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C-F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1/27~2023/01/26	467,330	460,562	4,132	3,950	116,532	110,501	354,930	346,374
2023/01/27~2024/01/26	354,930	346,374	30,707	30,400	0	0	385,637	395,100
2024/01/27~2025/01/26	385,637	385,637	28,903	30,000	19,650	20,660	404,352	434,234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이다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C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1/27~2023/01/26	5,200	5,125	0	0	0	0	5,200	5,075
2023/01/27~2024/01/26	5,200	5,075	0	0	0	0	5,200	5,328
2024/01/27~2025/01/26	5,200	5,200	0	0	0	0	5,328	5,722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024/01/27~ 2025/01/26	2023/01/27~ 2025/01/26	2022/01/27~ 2025/01/26	2020/01/27~ 2025/01/26	(%)
마이더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 (채권)(운용)	2021-01-27	7.50	6.30	3.86	-	2.54
비교지수	2021-01-27	5.80	4.76	3.00	-	1.78
수익률 변동성(%)	2021-01-27	2.86	3.59	4.21	-	3.80
마이더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 (채권)C	2021-02-22	-	-	-	-	-0.08
비교지수	2021-02-22	-	-	-	-	-0.08
수익률 변동성(%)	2021-02-22	-	-	-	-	0.33
마이더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 (채권)C-F	2021-01-27	7.37	6.17	3.74	-	2.42
비교지수	2021-01-27	5.80	4.76	3.00	-	1.78
수익률 변동성(%)	2021-01-27	2.86	3.59	4.21	-	3.80
마이더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 (채권)Cs	2021-01-27	7.38	6.18	3.74	-	2.42
비교지수	2021-01-27	5.80	4.76	3.00	-	1.78
수익률 변동성(%)	2021-01-27	2.86	3.59	4.21	-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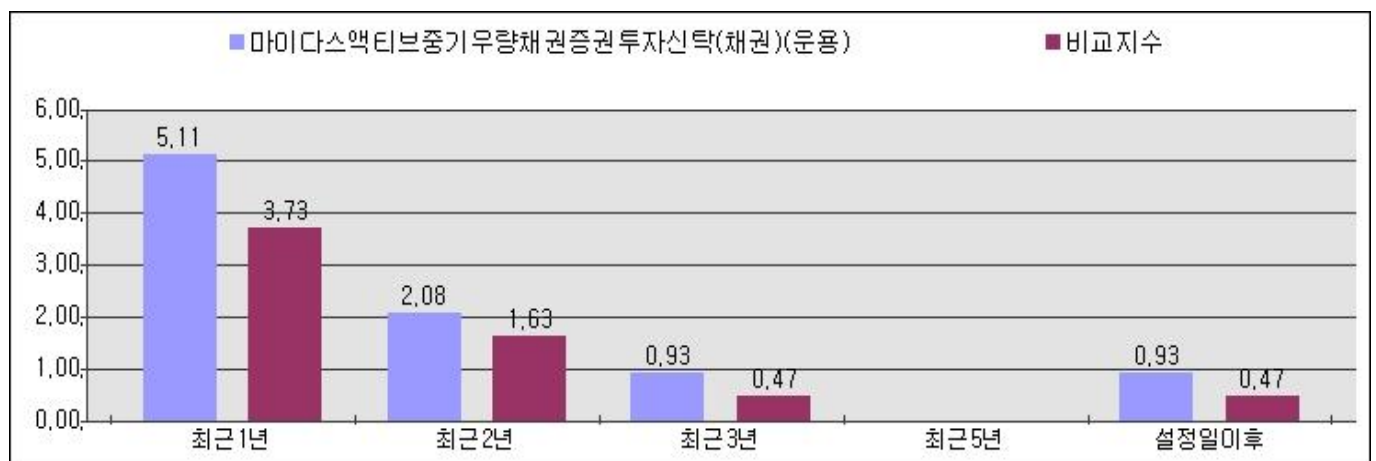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KIS 종합채권지수 국채(1~10Y) 65% + 국채(10Y~) 5% + 지방채~ABS(1~5Y, AA+ 이상) 28% + Call Rate 2%)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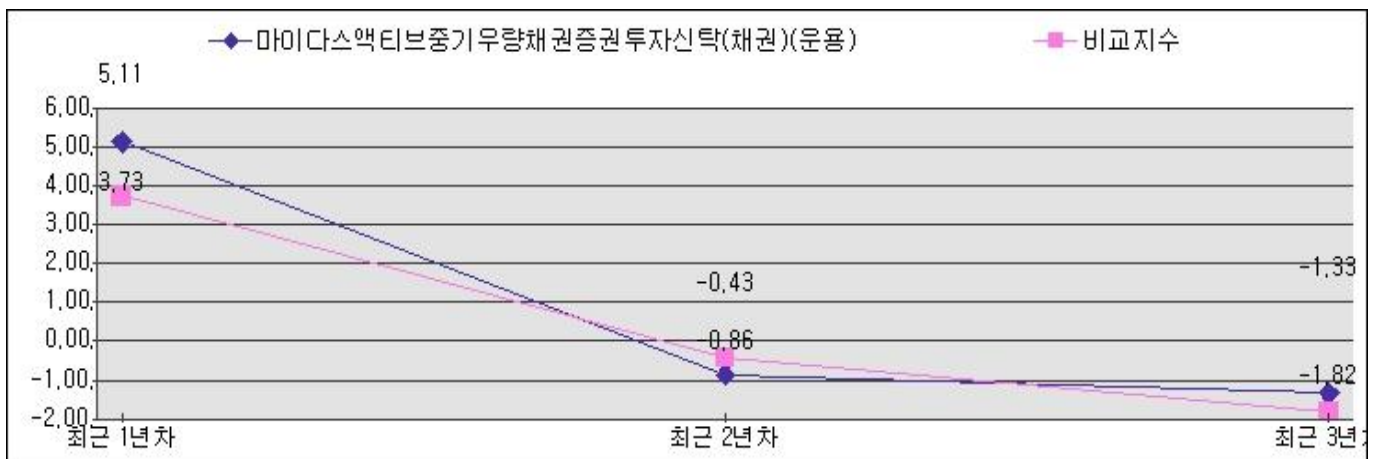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	최근 5 년차
		2024/01/27~ 2025/01/26	2023/01/27~ 2024/01/26	2022/01/27~ 2023/01/26	2021/01/27~ 2022/01/26	2020/01/27~ 2021/01/26
마이더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 (채권)(운용)	2021-01-27	7.52	5.11	-0.86	-1.33	-
비교지수	2021-01-27	5.81	3.73	-0.43	-1.82	-
마이더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 (채권)C	2021-02-22	-	-	-	-0.35	-
비교지수	2021-02-22	-	-	-	-0.32	-
마이더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 (채권)C-F	2021-01-27	7.39	4.99	-0.98	-1.45	-
비교지수	2021-01-27	5.81	3.73	-0.43	-1.82	-
마이더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 (채권)Cs	2021-01-27	7.4	4.99	-0.97	-1.44	-
비교지수	2021-01-27	5.81	3.73	-0.43	-1.82	-

(주 1) 비교지수 : (KIS 종합채권지수 국채(1~10Y) 65% +국채(10Y~) 5% + 지방채~ABS(1~5Y, AA+ 이상) 28% + Call Rate 2%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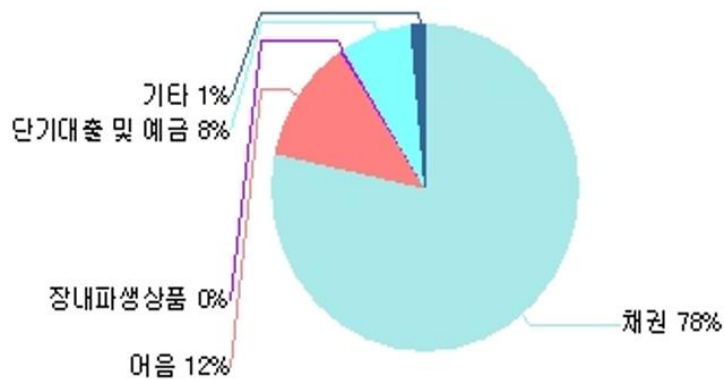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마이다스 액티브 중기 우량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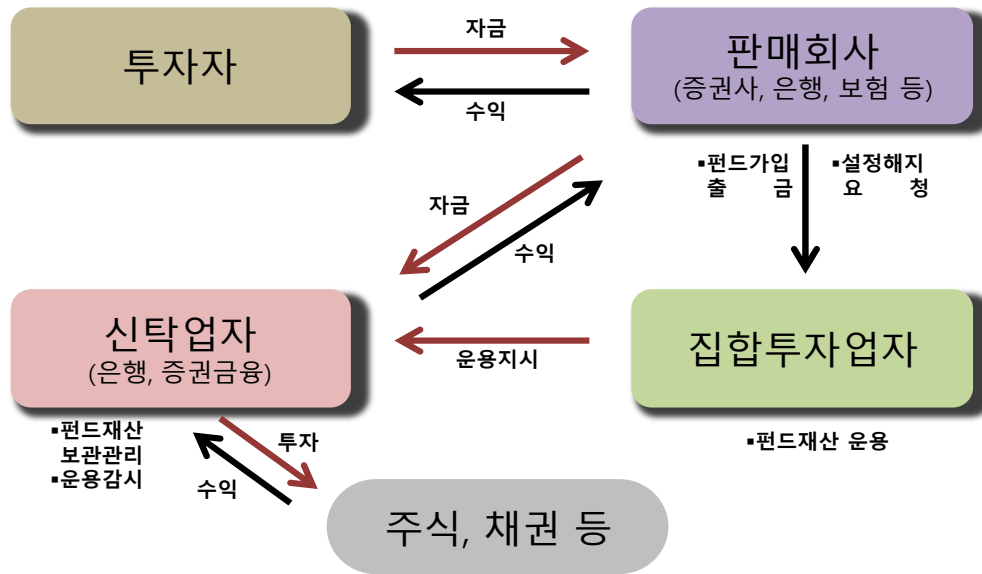
[2025.01.26 현재 /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0	497,369	78,572	0	52	0	0	0	0	49,427	9,384	634,805
	(0)	(78.35)	(12.38)	(0)	(0.01)	(0)	(0)	(0)	(0)	(7.79)	(1.48)	(100)
자산합계	0	497,369	78,572	0	52	0	0	0	0	49,427	9,384	634,805
	(0)	(78.35)	(12.38)	(0)	(0.01)	(0)	(0)	(0)	(0)	(7.79)	(1.48)	(1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연락처 : 02-3787-3500, www.midasasset.com)
회사 연혁	1999.02.01 회사설립등기(납입자본금 70 억원) 1999.03.1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1999.07.07 상호변경: 마이다스자산운용(주)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2004.02.01 무상증자(납입자본금 100 억원)
자본금	100 억원
주요주주현황	현희현 (10%), 이지혜(특수관계인 포함)(7.6%) 등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4.3.31	'23.3.31	항 목	'24.3.31	'23.3.31
현금및예치금	321	264	영업수익	444	480
유가증권	676	602	영업비용	243	262
유형자산	423	441	영업이익	200	218
기타자산	88	96	영업외수익	21	2
자산총계	1,507	1,403	영업외비용	1	38
유동부채	51	7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20	183
고정부채	-	-	법인세비용	39	43
부채총계	51	72	당기순이익	181	140
자본금	100	100			
자본조정	-48	-49			
잉여금	1,403	1,28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1			
자본총계	1,456	1,331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1.26 현재, 단위: 억원, 순자산 기준]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86,365	4,320	101,750	118	773	3,903	740	2,178	-	200,147

※일임형 자산을 포함한 전체 운용자산 규모로,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연락처	1588-1599
홈페이지	www.standardchartered.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연락처	☎ 02-6714-4600
홈페이지	http://www.hanai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연 락 처	02-2251-1300	02-3215-1400	02-398-3966
홈 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 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④ 투자신탁의 합병(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 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발생시 후속 조치
 - ⑥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⑦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 ⑦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 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⑧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⑨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⑩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 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 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생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 190 조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 190 조제 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④ 투자신탁의 합병(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발생시 후속 조치
- ⑥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⑦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⑦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⑧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⑨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⑩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 3) 및 4)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봉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을
-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ㄱ.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ㄷ.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ㄹ.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16 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투자신탁의 합병
5.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6.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 6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7.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게 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 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주식	1. 평가항목 기업방문 및 당사 내방 설명회 주선 능력, 투자정보, 매매 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 항목별 평가 점수의 합계를 제한하여, 특정 평가자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매체결(속도 및 정확성) 능력의 경우 마이너스 점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선정방법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회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

	전원이 매월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3. 회사 경영관련 비용, 마케팅 비용,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등은 매매를 대가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이며,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매매주문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 2. 평가주체: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주)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평가 항목 및 선정 기준은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투자주체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집합투자업자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투자시기	최소 의무투자금액 2억원: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납입 추가투자금액 50억원: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납입
투자기간	최소 의무투자금액 2억원: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추가투자금액 50억원: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분을 제외한 펀드 설정액이 100억원 초과시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최소 의무투자금액 2억원>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계획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함 <추가투자금액 50억원>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분을 제외한 펀드 설정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회수함
투자시기	최소 의무투자금액 2억원: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납입 추가투자금액 50억원: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납입

주1)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당면 해지사유 발생
-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는 의무투자기간(종전 보유기간 합산)까지 자사펀드 투자를 유지)

주2)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에는 운용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

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금 환매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 ·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